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負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 동 민**

<차례> _____

- I. 서 설
 - II.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면책규정
 - III.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
 - IV. 결 론
-

주제어 : 피보험자의 자살,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면책, 보험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 고의에 의한 사고, 자살면책기간

<국문초록> 상법에 의하면,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자의 책임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살면책기간이라는 시간의 경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보험자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에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비록 고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금 지급의 결정방식이 과연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유족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보호’의 이념과, 보험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이념이 상호간에 충돌되면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의 시간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소정의 자살면책기간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 본 논문은 (사)한국보험법학회의 2020년 10월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 논문접수일(2021.02.09), 심사개시일(2021.02.10), 게재확정일(2021.02.2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부채(負責)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유족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의 목적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도덕적 내지 양심적 이유로 자살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됨으로써,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보험자에게 유보되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2년 후의 자살을 계획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자살의 고의가 없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우연적 사정에 의해 자살의 충동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살이 방조되고 조장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낳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제도는 유족 등 보험수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지 생계 보호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는 역기능의 측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부채 여부는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여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자살의 ‘궁극적 동기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양심적 내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살처럼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간의 경과 후라도 유족을 위한 이타적 자살처럼 보험금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자살한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의 부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I. 서 설

1. 사회적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률의 저하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자의 부채를 인정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타적 내지 희생적 자살’을 감행하는 등 보험금 취득의 목적으로 자살면

책기간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자살률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살을 억제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국가적 노력이 요청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자살을 방조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살면책기간 제도는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자살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자살이 급증하다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연구보고서도 있다.¹⁾ 따라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보험자 부채규정은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 희생에 의한 자살을 방조 내지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족의 보호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면서, 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동 약관 조항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문제의 제기

상법에 의하면, “손해보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면책되지만(상법 제659조),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대하여만 면책되고 그 중과실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732조의 2, 제739).²⁾ 그런데 인보험 중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 범위가 일정 부분 축소되어 있다. 즉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면서도, i)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ii)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의 년도·성·연령별 사망통계”, 「생명보험 기초통계자료」, (2012).

2)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5판, 박영사, (2008), 804면.

일반적으로 보험은 우연성과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고의에 의한 사고 즉 우연성을 상실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하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인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면서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에 의한 사망인 자사(自死)의 경우 또는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 경과 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고의에 의한 사고를 보험자 면책으로 하면서도 약관을 통하여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 부채를 인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대한 반대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³⁾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서양속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 이는 생명보험의 목적과 보험의 기본원리 중에서 어느 이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사망보험의 경우,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보호’라는 이념과, 보험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이념이 상호간에 충돌되면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중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보험사고 부분은 제외하고,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사망에 대한 보험자 부채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살면책기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문제, 특히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통계자료 기타 외국의 입법례 등을 분석하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가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김은경,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의 법적 비교 고찰”, 『보험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105면.; 이경재,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384면.

4) 손주찬, 『상법(하)』, 제11증보판, 박영사, (2005), 547면.;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142면.; 정동윤, 『상법(하)』, 제4판, 법문사, (2011), 534면.; 이기수·최명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119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2판, 박영사, (2010), 564면.;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제5판, 삼영사, (2010), 112면 등 참조.

II.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면책규정

1. 상법의 규정

- **상법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32조의 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659조). 이 경우 보험자 면책의 근거는, 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 및 불확정성에 반하고, ② 자신이 유발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공서양속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보험범죄 내지 자살의 유발에 악용될 수 있고 ④ 보험계약자 등에 의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사고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⁵⁾ 이와 같은 보험의 기본원리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원리가 수정되어 적용된다. 상법의 보험편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

5)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246면.;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채조항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제21권 제4호, (2011), 84면.;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자살부채조항”,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2007), 315면.

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상법 제730조),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2 제1항). 결국 상법상으로는 사망보험의 경우라도 보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살은 보험자의 책임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생명보험 표준약관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의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자살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동 약관

제5조에 의하면, 사망보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⁶⁾

즉 보험자는 i)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死)’로 표현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또한 ii) “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계약에서는 부활의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고의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였다.’⁷⁾

동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i) “심신상실 등의 원인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사망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가 없는 정신적 장애로부터 야기되는 보험사고일 뿐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⁸⁾ 이와는 달리 ii) “자살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백한 고의에서 비롯되는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자살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일은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통하여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⁹⁾ 이러한 이유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생명보험의 특수성 및 고유의 역할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부채를 인정하는 보험정책적 규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6)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 약관(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분쟁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5), 14면.

7) 김재형·박승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관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400면.

8)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30면.

9) 한창희,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13), 357면.

Ⅲ.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

1. 자살면책기간 제도

(1) 의의 및 취지

“자살면책기간” 제도란,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하는 자살에 대하여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을 제외하고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자는 면책되며,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만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생명보험계약을 악용하여 오로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방지하는 등 사전적으로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을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¹⁰⁾ 결국 동 제도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 경과 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무조건 면책이 된다.¹¹⁾ 하지만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야기된 자살에 대하여는 그 동기를 불문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은 우연성과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계약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지만, 유족 기타 보험수익자의 보호,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의 증가에 대한 미검증, 자살의 동기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 생명보험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의 부책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²⁾ 하지만 일본의 소수설 및 일부 판례에 의하면, 보험제도의 본질상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보험금 취득을 위해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면책기간 경과 후라도 오로지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자살하는 경우 등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¹³⁾

10)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40면.

11) 이경용·김시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한국보험학회, (2007), 40면.

12)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 최근의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203면.

13) 西島梅治, “自殺免責期間經過後の自殺”, 『生命保険經營』 第67卷 第4号, (1999), 5頁.

(2) 외국의 입법례

1) 독일의 경우

□ 제161조 자살(Selbsttötung) (1) 사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제1문에 의한 기간은 개별 약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3)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제169조에 의한 잉여금 부분을 포함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81조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되고, 그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감액되는데 반하여, 동법 제169조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에 관하여만 규정하면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통하여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있었다.¹⁴⁾ 그러다가 2008년에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61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자살면책기간을 3년으로 법제화하였다.

개정된 보험계약법에서 3년의 자살면책기간을 법규정으로 명시한 이유는 유족 등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기간의 연장은 약관이 아닌 당사자 간의 개별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자살면책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거나 또는 그 기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다.¹⁵⁾ 한편 독일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서는 보험자의 의무를 확장하는 보험계약의 변경 또는 부활의 경우에, 그 변경 또는 부활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3년의 자살면책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¹⁶⁾

14) 이창우·윤상호, 전제논문, 306면.

15) 박세민, 전제논문, 146면.

2) 일본의 경우

□ **보험법 제51조 (보험자의 면책)**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급부를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보험금수령인 이외의 보험금수령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한 때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전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보험금수령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전 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생명보험약관 제1조 (사망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 다음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책임 개시된 날(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부활이 있는 때)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 이내에 피보험자의 자살
2. 보험계약자 또는 사망보험금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일본에서는 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2008년에 상법 중 보험 부분을 분리하여 단행법인 “보험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동법 제51조에서 생명보험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¹⁷⁾ 한편 일본에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보험회사마다 개별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컨대 생명보험상호회사가 판매하는 유배당중신보험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책임이 개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자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⁸⁾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1930년에서 1940년까지는 1년으로 하다가, 1940년에서 1971년까지는 2년으로 연장되었고, 1971년부터 1998년까지는 다시 1년으로 하다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다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¹⁹⁾ 2004년 이후로는 3년으로 재연장 하였다.²⁰⁾ 이와

16) 박영준, 전계논문, 101면 참조

17) 遠山優治, “生命保險契約における保險者の免責”, 『新しい保險法の理論と實務』, 經濟法令研究會, (2008), 188~195頁.

18) 박영준,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124면.

같이 일본은 보험법 제51조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개별 생명보험약관에서 자살면책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국 일본에서는 높은 자살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에 1년이던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2004년에 다시 3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3) 미국의 경우

□ Section 3203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한 표준조항)²¹⁾

* subsection (b) (1) 뉴욕주에서 발행 또는 교부된 생명보험증권은 특정한 외국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정 행동에 기인하는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킬 수 없다.

- (A) 아래 subsection (c)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에 의한 사망
- (B) 보험증권의 발행 후 2년 이내의 자살
- (C) 증권에서 명기된 항공비행(aviation)에 의한 사망
- (D) 보험증권의 발행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증권에 특정된 위험한 직업으로 인한 사망

미국의 경우 뉴욕주 보험법 Section 3203에서는 우리나라 보험법상 자살면책이나 전쟁면책 이외에, 특정한 항공비행 및 위험한 직업에 의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만, 보험료적립금 및 배당금을 환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자살면책기간과 관련하여, 뉴욕주 보험법 Section 3203 (b) (1) (B)에서는 보험증권의 발행 후 2년간을 보험자의 면책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33개주에서는 이를 2년으로, 2개주는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주는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²³⁾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약관에 'while sane or insane'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19)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466頁.

20) 이창우·윤상호, 전계논문, 305면.

21) Robert E. Keeton·Alan I Widiss, Insurance Law, West Publishing Co. 1988, p.506.

22) 박영준, 전계논문, 118면.

23) 양승규·장경환, 전계논문, 193면.

면책기간의 경과 전에 발생하는 자살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²⁴⁾ 한편 미주리주 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에 자살을 의도했다는 고의를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보험계약 체결 후의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데, 실무상으로는 보험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살면책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²⁵⁾

4) 기타 국가의 경우²⁶⁾

영국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자살면책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내에 발생한 의식 있는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²⁷⁾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보험법 제132-7조에 의하여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내의 자살이거만 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사(自死)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된다.²⁸⁾

한편 스위스, 터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면책기간이 3년으로 가장 길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체코, 헝가리, 캐나다, 멕시코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면책기간이 1년으로 짧게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자살면책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²⁹⁾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소정의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채의 근거와 그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 John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89, p.77.

25) Janice Greider·William Beadles, Law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4th ed.), R.D. Irwin Publishing Co., 1979, p.550.; Muriel L. Crawford, Life and Health Insurance, 1998, p.352.; 박세민, 전개논문, 147-148면에서 재인용.

26) Joe Chen·Yun Jeong Choi·Yasuyuki Sawada, "Suicide and Life Insurance", 2008, p.17, Table 1(The Length of Exemption Periods in OECD Countries.); 양승규·장경환, 전개논문, 193면.

27) 박영준, 전개논문, 119면 참조.

28) 김흥기, 전개논문, 54면.; 이용석, 전개논문, 39면.

29)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37면 참조.

2. 보험자 부채(負責)의 근거³⁰⁾와 그 문제점

(1) 유족 등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호

1) 부채의 근거

유족 보호의 측면과 관련하여, 유족으로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이든 일반사망이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의 인정 유무 및 목적을 떠나 유족보호라는 생명보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³¹⁾ 또한 피보험자의 자살은 피보험자 자신에 의한 독립적인 결정이었을 뿐이고,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었던 유족의 처지에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자살이라는 고의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차단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험수익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³²⁾ 그리고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보험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자로 하여금 자살면책기간 이후에는 부채하게 하는 것이 보험가입자 측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약관을 통한 계약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다.³³⁾

2) 문제점의 검토

(가) 위 견해에서는, 자기의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살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였을 뿐이고, 보험수익자에게 직접적인 원인제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그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의 고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이 전소한 때에도, 피보험자인 임대인은 가옥의 화재에 어떠한 원인제공도 한 적이 없으므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저야한다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0) 양승규·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194면;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9집, (2004), 197면.; 이경용·김사영, 전계논문, 41면.; 김형기·이광호, 전계논문, 41면.; 김철호, 전계논문, 88면.; 한병규, 전계논문, 31면.; 이용석, 전계논문, 32면.

31) 김철호, 전계논문, 88면.; 한병규, 전계논문, 31면.

32) 송달섭,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7), 267면.

33)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11), 272면.

(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당해 생명보험에 동의를 하면서 그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고(상법 제731조 제1항), 대부분의 경우는 피보험자와 긴밀한 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가 보험수익자로 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보험수익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타적 자살의 형태가 될 터인데, 이는 보험제도를 악용한 보험금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수익자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제공은 어차피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양자를 귀책사유의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중용 내지 사주를 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보험보호를 받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 보험수익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는 피보험자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보호할 가치가 있을 뿐이고, 자신과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예정하여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는 아닌 것이다. 또한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보험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면서까지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는 것은, 보험단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공평에 반하는 것이다.

(2) 2년 후 자살계획 실행의 가능성

1) 부채의 근거

자기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러한 의도나 목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을 실행하는 것은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³⁴⁾ 또한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험금 수령에 관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에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과 그러한 목적을 가진 보험계약의 체결

34) 김홍기, "피보험자의 자살과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2), 53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도 공서양속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³⁵⁾

그리고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취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또는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적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면책기간 경과 전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려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 기는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³⁶⁾

2) 문제점의 검토

(가) 위 견해에서는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면책기간 경과 후에 자살을 실행할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자살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계획적 자살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적은 빈도로 야기되더라도 이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면책기간의 존재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한 피보험자가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면책기간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역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책기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보험금 지급은 지양해야 한다.

(나)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노려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은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일 뿐이므로,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에서의 고의를 보험금 수령 목적에서의 고의와 분리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판례도 「자살자의 불법목적의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불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⁷⁾

35) 김철호, 전계논문, 88면.; 한병규, 전계논문, 31면.

36) 김산정,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되는지 여부 -”, 『보험학회지』 제73집, (2006), 64면.

(3) 자살동기에 대한 입증의 곤란 및 실무상 편의

1) 부채의 근거

피보험자의 자살동기가 보험금 취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면책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³⁷⁾ 판례도 「자살자의 불법목적 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불법목적 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입증곤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자살 내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것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살면책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³⁹⁾ 또한 자살면책기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자살면책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자살은 일단 의식 있는 고의적 자살로 보아 구체적 입증이 없어도 보험자는 면책되고, 반대로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의식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⁰⁾

2) 문제점의 검토

피보험자의 자살동기에 관한 입증곤란이라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자살면책기간의 효용이 있다고 하지만, 입증책임과 관련된 실무상의 편리함 때문에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사고발생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원칙이 훼손될 수는 없는 것이다.⁴¹⁾ 또한 면책기간 경과 전의 자살은 일단 의식 있는 고의적 자살로 보아 구체적 입증이 없어도 보험자가 면책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의식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 이내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살에

37)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4987 판결.

38)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39)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2000가합4987 판결.

40)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한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49면 참조

41) 박세민, 전계논문, 127면.

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이후에는 보험금 취득의 목적으로 자살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보험제도의 선의성과 단체성 등을 고려해보면, 보험자의 책임 여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자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면책기간의 경과 전후에 따라 확일적으로 달라질 사항은 아닌 것이다.

(4)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의 증가 여부

1) 부채의 근거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자살이 급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령 고의에 의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자살통계가 이미 보험요율의 산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²⁾ 또한 자살면책기간 제도로 인하여 자살의 유발을 막을 수 있으면, 그러한 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부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공서양속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⁴³⁾

2) 문제점의 검토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빈도는 아래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간 이후에 자살이 급증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그 논거가 빈약하다. 또한 동 견해에서는 자살통계가 보험요율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보험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시각에서의 지적이다. 즉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이 증가함으로써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자는 이러한 지출규모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것이고, 이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단체의 입장에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특정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가 속한 보험단체의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이를 전

42) 이정용·김사영, 전계논문, 41면.

43) 김형기·이광호, 전계논문, 42-45면.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들이 부당한 초과보험료를 납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동 견해에서는 자살면책기간 제도에 의해 자살률이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기간 경과 후에 자살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어떠한 분석결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자살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 자살면책기간 제도의 존립 이유는 제대로 된 명분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3. 자살면책기간에 대한 해결방안

(1)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률의 급증

1) 외국의 통계자료

(가)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자살면책기간이 13개월로 정해진 국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률이 보험 가입 13개월 후부터 3년차까지 급속히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⁴⁴⁾ 반면 자살을 제외한 자연사망률과 사고사망률은 모두 보험가입의 경과년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단조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면책기간 후의 자살률은 자연적 사고의 사망률과 상이한 변화 추이를 보이는 데, 이는 면책기간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자살이 조장되는 ‘동기부여 효과’(incentive effect)가 존재할 개연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금의 크기에 따른 동기부여 효과의 차이도 달라지는데, 보험금 대비 자연사망자 수보다 자살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자연사망과 비교하여 자살이 발생한 계약의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⁴⁵⁾

(나) 미국에서 보험가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살률은 대부분의 주에서 자살면책기간인 2년차 이후에 4배 정도 증가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다가, 5년차에 최고점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난다.⁴⁶⁾ 반면 보험가

44) Yip, Paul, David Pitt, Yan Wang, Xueyuan Wu, Ray Watson, Richard Huggins, and Ying Xu, “Assessing the Impact of Suicide Exclusion Periods on Life Insurance”, *Crisis: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010, 31(4), pp. 217-223.

45) 이창우, 윤상호, 전계논문, 307면.

46) Tseng, Samuel Hsin-yu, “The Effect of Life Insurance Policy Provisions on Suicide Rates, in Three Essays on Empirical Applications of Contract Theory”, Ph.D. thesi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2006.

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연사망률은 자살면책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하거나 또는 보험가입 전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가입 후의 상황변화로 인해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자살면책기간 내에 자살할 의도를 갖고 있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자살을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위장하는 소위 '위장자살(disguised suicide)'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즉 자살면책기간 내에 순수한 사고로 보이는 사망 중에서 34% 이상이 실제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살면책기간의 설정으로 인해 자살을 사망사고로 위장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⁴⁷⁾

2) 우리나라의 통계자료

[그림 1]은 자살면책기간 전후의 자살자 수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자살면책기간 후에 자살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림 1]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자 중에서 자살자 수가 절대적 수치로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며, 자살면책기간 후 생명보험 가입자 수 대비 자살자 수로 정의된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⁴⁸⁾ 다만 경과보유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 계약자 수가 감소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일반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생명보험 가입자 수 대비 자살자 수, 즉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⁴⁹⁾

[그림 2]는 자살면책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살건수와 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는 연도별로 산출된 자살면책기간 전후의 자살건수와 자살률의 변화, 그리고 연도에 상관없이 산출된 자살면책기간 전후의 총자살건수와 전체 자살률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⁵⁰⁾ 첫째, [그림 2] (a)는 자살면책기간 전후에 발생하는 자살건수의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로서, 자살면책기간 후에 자살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그림 2] (b)는

47) 이창우·윤상호, 전계논문, 30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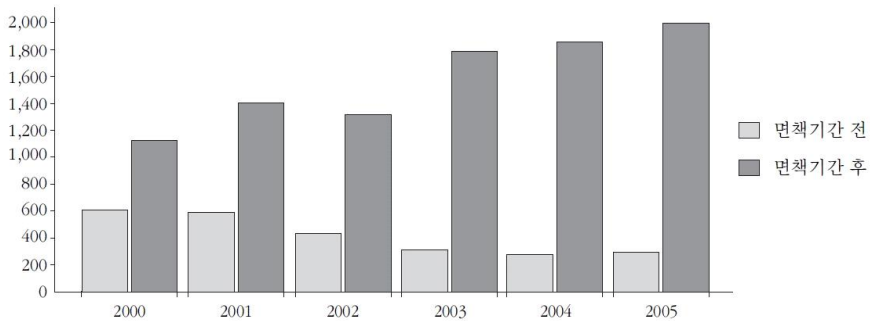
48) 이경룡·김시영, 전계논문, 52면 참조; 이창우·윤상호, 전계논문, 309면.

49) 이창우·윤상호, 전계논문, 309면.

50) 이창우·윤상호, 전계논문, 3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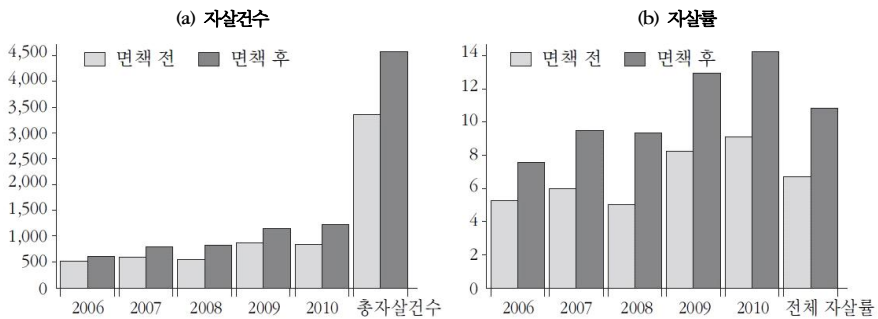
자살면책기간 전후로 나누어서 자살률이 변화하는 추이를 보여 주는데, 이에 의하면 자살률이 자살면책기간 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년 자살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도 보여주고 있다.⁵¹⁾ [그림 2]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 계약보유건수 대비 자살건수로 정의된 자살률을 통하여, 자살면책기간의 설정으로 인한 자살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⁵²⁾

그림 1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자살면책기간 전후 자살자 수 추이



자료: 이경룡·김사영, 전개논문, (2007), 55-70면.

그림 2 면책기간 전후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자살건수와 자살률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년도·성·연령별 사망통계”, CY2006-CY2010 생명보험 기초통계자료, (2012).

51) 이창우·윤상호, 전개논문, 315면.

52) 이창우·윤상호, 전개논문, 315면.

(2) 보험의 선의성 및 단체성의 충족

1) 자살약관 취지의 악용

생명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보호를 하는 것은, 생명경시와 금전민능의 풍조가 만연한 사회현실에 비추어볼 때 자살의 유인요소가 될 수도 있고,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안겨줄 수도 있다.⁵³⁾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약관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하여 당연히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논거로서, 자살면책 약관을 '불가쟁약관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원래 미국에서의 불가쟁조항은 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자살약관은 보험자의 인수위험과 담보제외의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불가쟁조항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⁴⁾ 한편 자살면책 약관이 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본래 자살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유족 기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보험계약의 신의칙과 선의성이 정면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도 허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⁵⁵⁾

2) 일본에서의 새로운 논의

일본의 경우, 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종래 그 자살의 동기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지만, 그러한 자살이 '보험금의 취득을 유일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는 유력한 소수설⁵⁶⁾도 있었다. 이후 1999년에 다수의 하급심

53) 양승규·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197면.

54)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 최근의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196면.

55) 양승규·장경환, 전제논문, 199면.

56) 吉野慶, "約款に定める自殺免責期間経過後の自殺免責",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第211号,

판결에서는 「자살면책기간 후의 자살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그런데 2001년에 동경 고등재판소에서 「보험자가 그 자살이 ‘보험금의 취득을 유일 또는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자살약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법 제680조 제1항 제1호(현행 보험법 제5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소수설에 가까운 견해를 취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보험금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보험자의 부채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면책기간 제도와 관련하여, 면책기간 경과 이전의 자살에 대하여도 그 자살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⁹⁾ 하급심 판례 중에는 「말기암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가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 등의 상황에서 자살면책기간 내에 자살을 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⁶⁰⁾

위 판결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일반적인 자살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는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야기한 고의적 사고임이 분명하며, 보험의 원리상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견해가 있다.⁶¹⁾ 이와는 달리 자

(2006). 56頁.; 大森忠夫, 「保險法」, 補訂版, 有斐閣, (1985), 292頁.; 大澤康孝, “生命保險における自殺免責”, 「エコノミア」 第89号, 横浜經濟學會, (1986), 11頁.

57) 岡山地裁平成11(1999). 1. 27 金法 第1554号 90頁.; 山口地裁平成11(1999). 2. 9 判時 第1681号 152頁.; 松山地裁平成11(1999). 8. 17.: 吉野慶, 前掲論文, 6頁.

58) 東京高裁平成13(2001). 1. 31 高民集 第54卷 第1号 1頁, 金判 第1111号 10頁.; 이 판결에 관하여는 竹浜修, “自殺免責期間經過後の自殺と保險者免責の可否”, 「保險事例研究會レポート」 第197号, (2005). 13頁.; 김선정, 전계논문, 193면에서 재인용.

59) 김흥기, “피보험자의 자살과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2), 60면.

60)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61) 박세민, 전계논문, 129면.

살면책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칙에 반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⁶²⁾

생각전대, 위 판결에서는 면책기간 내의 자살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과 고통 속에서 보험금 편취의 목적 없이 자살을 한 사실이 증명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내용에 제약받지 않고 피보험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자살의 목적에 따라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판결이다.

(3) 자살의 유형에 따른 부책의 결정

1) 자살 부책조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는 자살면책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동조 제1호 단서에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부책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이란 피보험자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피보험자의 자살은 자신의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이므로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자살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부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⁶³⁾

2) 자살의 유형에 따른 보험자의 부책

(가) 자살은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정신상태에서 의식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식적 자살”과, 이러한 고의 없이 심신상실 등의 질병이나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곤란하여 완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자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의식적 자살은 다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과 그렇지 아닌 자살로 구분할 수

62) 김재형·이영훈, “말기암 환자의 자살과 자살면책약관의 해석 -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 (2006), 237면.

63) 이용석, 전제논문, 4면.

있다. 특히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 자살은, 보험의 '청약 당시부터 자살을 계획하고 가입하여 자살하는 경우와 나중에 비로소 자살의 고의가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나) 여기서 보험의 '청약 시점부터' 자살을 계획하고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한 경우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완전한 고의적 자살이므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동일한 자살이라도 정신질환 등의 병적 원인에 의한 자살 또는 보험금 수령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살, 예컨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 또는 '양심의 가책'에 의한 자살의 경우는, 보험사고의 원인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자살이 아니므로, 보험자의 부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 옳다. 그 이유는 정신병에 의한 자살은 피보험자의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자살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없는 사고이며, 또한 양심이나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 수령의 부정 목적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자를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적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 수령의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예컨대 보험의 청약 당시부터 그러한 목적이 없거나 또는 양심적 내지 도덕적 이유로 촉발된 자살은, 면책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사망사고와 동일시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4. 소 결

보험은 우연하고 불확실한 사고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자들로 구성된 보험단체 안에서 그 위험을 이전하고 분배하기 위한 조정을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건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므로, 경우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이 요구되는 것이다.⁶⁴⁾ 즉 보험은 사행계약으로서 우연하고 불확실한 사고로 인하여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될 필요가 있다.⁶⁵⁾

64)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자살부채조항", 「경영법률」 제18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3면.

65) 김선정, 전계논문, 107면.; 유주선, 전계논문, 13면.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 보상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공서양속에 반해서는 안 된다. 즉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위반하여 보험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책사유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⁶⁶⁾ 본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기로 하는 특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다.⁶⁷⁾

생각건대, 자살의 동기나 목적이 보험금의 취득에 있는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보험의 선의성과 윤리성, 보험사고의 불확정성, 공서양속의 보호 등을 이념으로 하는 생명보험의 본질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즉 자살면책기간의 경과를 보험자 면책 여부의 결정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면책기간 내의 자살에 대하여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 또는 '양심의 가책'에 의한 자살처럼 보험금 취득의 목적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이 옳다. 또한 면책기간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그 동기를 따져서 '보험금 취득의 목적이 자살의 감행에 유일한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다.'⁶⁸⁾

자살면책기간의 경과를 보험계약의 존재와 자살의 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입증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⁶⁹⁾ 다만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살 동기가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토록 하는 것을 유일한 또는 중요한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⁷⁰⁾ 이러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자살면책기간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⁷¹⁾

66) 박세민, 전계논문, 128면.

67)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222면.;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143면.;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제3판, 삼지원, (2008), 112면.; 박세민, 전계서, 248면.

68) 동지: 박세민, 전계논문, 129면 참조

69) 김형기·이광호, 전계논문, 73면.

70) 박세민, 전계논문, 130면.

71) 김선정, 전계논문, 201면 참조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연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원리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서양속에 반하며 더 나아가 공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⁷²⁾ 자살 면책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사고는 보험의 특징인 우연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면책기간 이후의 보험자 부채 특약은 자살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다.⁷³⁾ 즉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의 충동을 갖게 된 자는, 면책기간 경과 후의 보험자 부채으로 인하여 더더욱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원인이 되어 자살률을 증가시키는 폐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살면책기간 이후에 촉발된 자살의 경우, 고의에 대한 사고를 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을 배척하면서도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험의 원칙을 도외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이나 일정한 기간의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⁴⁾ 생각건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신의성실 및 공서양속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살한 것이 입증된 경우라면, 2년이라는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의 여부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⁷⁵⁾

IV. 결 론

상법상으로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살은 보험자의 책임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피보험자

72) 유주선, 전계논문, 15면.

73) 이경용·김시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한국보험학회, (2007), 35면.

74)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한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4권,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51면.

75) 등자: 박세민, 전계서, 276면.

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살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부책이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여 타당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생명보험이 추구하는 목적과 보험에 내재하는 기본원리 중에서 어느 이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결국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보호’라는 이념과, 보험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이념이 상호간에 충돌되면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생각건대, 보험자의 부책 여부는 면책기간의 경과 여부로 좌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자살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면책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정치적 결단이나 양심의 가책 등에 의한 자살로서 보험금 수령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면책기간의 경과 후”라도 피보험자의 자살 동기가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토록 하는 것을 유일한 또는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면책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자살의 동기가 이타적 내지 희생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가 보험자 부책의 결정적 요소로 되어야 한다. 즉 보험수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자살약관을 악용하는 ‘이타적 자살’에 대하여는, 자살의 방지 및 보험단체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피보험자가 자살 면책 약관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보험자의 경우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보험자 부책 규정이 과연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보험법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보험자는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향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함으로써 영업이익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일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결국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보험단체에 속해 있는 다른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강제받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의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담을 선의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귀착되므로, 형평의 차원에서 그 부당성과 불합리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보험자 부채 규정이 문체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자살면책 약관을 둘러싼 이해관계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물론이고, 보험자와 보험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기간의 경과라는 확실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 '보험계약자의 경우,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후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증가가 미미하여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ii) '보험자의 경우,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여 보험단체에게 전가하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약관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또한 iii) '피보험자의 경우, 계획적인 이타적 자살에 의해 유족들에게 보험금 수령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구태여 동 약관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iv) '보험수익자의 경우, 연유가 어찌되었건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동 약관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의 자살면책기간 규정은 보험의 우연성과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 등 보험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의 보호라는 순기능 보다는 자살의 방조라는 역기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즉 보험 가입 당시부터 자살을 기획하여 면책기간 경과 후에 실행할 수도 있고, 면책기간 도중에 또는 그 이후에 경제적 궁핍이나 심리적 압박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자살 충동에 빠져서 이타적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으므로, 동 약관은 사실상 자살을 방관 내지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자살률이 증가하는 폐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계약의 이해관계인들이 이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보험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살로 인한 국가적 내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적 차원에서 자살면책기간 제도의 전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11).
-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 손주찬, 「상법(하)」, 제11증보판, 박영사, (2005).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4).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2판, 박영사, (2010).
- 채이식, 「상법 IV (보험법·해상법)」, 박영사, (2001).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5판, 박영사, (2008).
-
- 고택근,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한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2008).
- 김선정,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 - 최근의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보험학회지」 제69집, 한국보험학회, (2004).
- 김선정, “재해보험약관상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되는지 여부 -”, 「보험학회지」 제73집, (2006).
- 김은경,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의 법적 비교고찰”, 「보험법연구」 제7권 제1호, (2013).
- 김재형·이영훈, “말기암 환자의 자살과 자살면책약관의 해석 -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5나8301 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 (2006).
- 김철호, “생명보험약관상 자살 면·부채조항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 제21권, (2011).
- 김형기·이광호,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면책조항의 개선방향”, 삼성금융연구소, (2004).
- 김흥기, “피보험자의 자살과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2).
- 박세민,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고의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 및 자살면책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0권, (2014).
- 박영준,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3).
- 송달섭,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21권, (2007).
- 양승규·장경환, “피보험자의 자살과 사망보험금”, 「보험법연구」 제4권 제2호, (2010).

■ 保險法研究 제15권 제1호 (2021)

-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채조항”, 「경영법률」 제18집, (2007).
- 이경재, “자살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2017).
- 이경용·김시영, “생명보험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78집, 한국보험법학회, (2007).
- 이용석,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채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보험학회지」, (2004).
- 이창우·윤상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법경제학회, (2017).
- 최병규, “생명보험과 자살면책에 관한 한독비교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4호, (2012).
- 한창희,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13).
-
- 大森忠夫, 「保險法」, 補訂版, 有斐閣, (1985).
- 大澤康孝, “生命保險における自殺免責”, 「エコノミア」 第89号, 横浜經濟學會, (1986).
- 西島梅治, “自殺免責期間經過後の自殺”, 「生命保險經營」 第67卷 第4号, (1999).
- 竹浜修, “自殺免責期間經過後の自殺と保險者免責の可否”, 保險事例研究會, (2005).
- 吉野慶, “約款に定める自殺免責期間經過後の自殺免責”, 「保險事例研究會レポート」 第211号,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06).
- 遠山優治, “生命保險契約における保險者の免責”, 「新しい保險法の理論と實務」, (2008).
-
- Muriel L. Crawford, Life and Health Insurance, 1998.
- Robert E. Keeton·Alan I Widiss, Insurance Law, West Publishing Co. 1988.
- John Dobbyn, Insurance Law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89.
- Janice Greider·William Beadles, Law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4th ed.), R.D. Irwin Publishing Co., 1979.
- Joe Chen·Yun Jeong Choi·Yasuyuki Sawada, “Suicide and Life Insurance”, 2008.
- Yip, Paul, David Pitt, “Assessing the Impact of Suicide Exclusion Periods on Life Insurance”, Crisis: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Suicide of the Insured after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has elapsed

Kim, Dong Min*

In general, insurance is based on contingency and uncertainty, so it fits the basic principle of insurance that the insurer is exempt from intentional accidents, in other words, accidents that have lost contingenc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even in the case of death insurance, the insurer's exemption is recognized for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the 'intentional'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insured's suicide is not a reason for the insurer's liabilit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in principle,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ntentional accidents, but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money for death due to the insured'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the insured's intentional death occurring after the insurer's exemption period of two years. In this regard, it is a ques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law whether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suicide of the insured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This is a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ideology of "*political protection at the humane level*" for the beneficiaries such as the bereaved family and the ideology of "*goodwill of insurance and protection of insurance organizations*"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Therefore,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problem of Article 5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which

* Ph.D,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stipulates that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money about the insured's intentional death that occurs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In conclusion,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but 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ured's suicide regardless of such period. In other words, eve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suicide that is not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empted from the insurer if he commits suicide for the main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even after that period. In particular, the insurer's exemption must be granted for altruistic suicide whose purpose is to help insurance beneficiaries by ensuring that insurance money is paid to the beneficiaries such as family or relatives,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Key Words : the insured's suicide, the insurer's exemption, clause of insuranc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intentional accident, period of suicide exemption